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4131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4-09-2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9-25



소 풍 가 다

정 보 공 개 서

(주)함께가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함께가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115번길 13-1, 3층

가맹사업 담당 : 박일섭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현황

※ 별 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 소풍가다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소풍가다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주)함께가다			
영업표지	주 소			
소풍가다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115번길 13-1, 3층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	법인설립일	대표이사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0.08.25	2020.08.21	박일섭	-	0504-195-3989
법인등록번호	230111-0336931	사업자등록번호	556-87-0178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대표이사	(주)함께가다 박일섭	소풍가다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115번길 13-1, 3층		
			박일섭	-	0504-195-3989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사내이사	(주)함께가다 박주영	소풍가다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115번길 13-1, 3층		
			박일섭	-	0504-195-3989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감사	(주)함께가다 김종임	소풍가다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115번길 13-1, 3층		
			박일섭	-	0504-195-3989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

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소풍가다	특별한 경험이 특별한 추억을 만든다 Special Experience Make Special Memory Sopoong Everywhere Sopoong Anytime
상 호	소풍가다 OO 점	
상표/서비스표	 	출원
		상표 출원번호 제 40-2022-0202083호 2022.11.04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40-1985526호 2023.03.03 존속기간 만료일 : 2033.03.03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131,011	1,084,064	46,947	464,706	47,677	31,807
2022년	1,204,052	1,248,525	-44,473	490,983	-53,284	-91,420
2023년	1,200,709	1,303,686	-102,977	455,400	-690	-58,503

당사는 소풍가다 브랜드에 대해 경주 양남점의 1곳의 직영점이 있으며, 상기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해당 직영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업체/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박일섭	대표이사	2020.08.21.~현재	대표이사	(주)함께가다/업무총괄
	박일섭	대표이사	2021.05.18.~현재	대표이사	소풍가다 직영점 업무총괄
	박주영	사내이사	2020.08.21.~현재	사내이사	(주)함께가다/사무총괄
	김종임	감사	2020.08.21.~현재	감사	(주)함께가다/감사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 원 수 (명)		직 원 수 (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배우자)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해당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 or 등록 여부(일자)	출원번호 or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상표 서비스표	출원일 2022. 11. 04 등록일 2023. 03. 03	출원: 제 40-2022-0202083호 등록: 제40-1985526호	(주)함께가다	2033.03.03
상표권 부여기간	해당없음				

▶ 상기 상표와 서비스표는 귀하가 당사의 승인 하에 가맹점사업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입니다.

▶ 다만,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PONGGADA

Ⅱ. 가맹본부의 [소풍가다] 가맹사업 현황

1. [소풍가다]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계약 체결사실 없음

[소풍가다]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1년 5월 27일 (법인등기부상 지점 등기일)

2. [소풍가다]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함께가다	소풍가다	박일섭	가맹사업 예정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115번길 13-1, 3층

3. [소풍가다]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소풍가다	커피	커피, 음료, 디저트, 카이막, 빵 등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소풍가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 역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 체	1	0	1	1	0	1	1	0	1
서 울	0	0	0	0	0	0	0	0	0
부 산	0	0	0	0	0	0	0	0	0
대 구	0	0	0	0	0	0	0	0	0
인 천	0	0	0	0	0	0	0	0	0
광 주	0	0	0	0	0	0	0	0	0
대 전	0	0	0	0	0	0	0	0	0
울 산	0	0	0	0	0	0	0	0	0
세 종	0	0	0	0	0	0	0	0	0
경 기	0	0	0	0	0	0	0	0	0
강 원	0	0	0	0	0	0	0	0	0
충 북	0	0	0	0	0	0	0	0	0
충 남	0	0	0	0	0	0	0	0	0
전 북	0	0	0	0	0	0	0	0	0
전 남	0	0	0	0	0	0	0	0	0
경 북	1	0	1	1	0	1	1	0	1
경 남	0	0	0	0	0	0	0	0	0
제 주	0	0	0	0	0	0	0	0	0

5. 최근 3년간 [소풍가다]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	-	-	-	-	-
2022년	-	-	-	-	-	-
2023년	-	-	-	-	-	-

6. [소풍가다]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의 [소풍가다]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소풍가다] 이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배우자)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해당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운영 중인 가맹점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역	2023 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연간 매출액(단위:천원, VAT미포함)						산출 가맹점 수
		연간 매출액 평균		연간 매출액 상한		연간 매출액 하한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		-		-		-
서울	-	-		-		-		-
부산	-	-		-		-		-
대구	-	-		-		-		-
인천	-	-		-		-		-
광주	-	-		-		-		-
대전	-	-		-		-		-

울산	-	-	-	-	-	-	-
세종	-	-	-	-	-	-	-
경기	-	-	-	-	-	-	-
강원	-	-	-	-	-	-	-
충북	-	-	-	-	-	-	-
충남	-	-	-	-	-	-	-
전북	-	-	-	-	-	-	-
전남	-	-	-	-	-	-	-
경북	-	-	-	-	-	-	-
경남	-	-	-	-	-	-	-
제주	-	-	-	-	-	-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포스테이터에 따른 매출액 입니다.]

[당사의 가맹점 중 영업일이 1년이 안 되는 가맹점이 있어 일평균 매출액을 산출한 다음 1년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 및 매출액 파악이 안된 가맹점의 데이터는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기준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0개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	-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	-		-	
	가맹본부와의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계약기간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	-	-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당사에서 [2023년]에 [소풍가다]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	-	-	-	-
광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전 지점	1588-999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국민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인터넷 뱅킹 이용시	① 인터넷뱅킹(www.kbstar.com) 접속 →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 (기업뱅킹)클릭 → ④ 기업지원서비스(가맹금 예치제)클릭 → ⑤ (가맹점사업자 서비스페이지 바로 가기)클릭 → ⑥ 가맹본부명 및 사업자번호 기입 → ⑥ 가맹금예치신청서 내용 기입 후 예치가맹금 이체
	매장 직접 방문 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예치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국민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국민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통장 개설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가맹계약서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개인인감 증명서 ⑤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국민은행에서는 가맹금예치에 관한 업무를 매장 방문으로 이루어지며, 국민은행 계좌가 있으신 사업자는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맹금을 예치 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체결 후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귀하에게 교부합니다.



귀하는 가맹금 예치신청서에 기재된 은행에 가셔서 가맹본부의 계좌로 가맹금을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입금 내역은 당사로 등록정보가 전달됩니다.



귀하는 예치 후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 현황을 조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소풍가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기타 기본공사 외 추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최초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인테리어, 설비/정착물 비용	가맹본부 또는 지정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변동 금액

가. 최초 가맹금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최초 가맹비	2,200	계약 체결과 동시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반환할 경우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교육비	2,200	계약 체결과 동시	교육 시작 10일전에 계약 해지	교육에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합계	[4,400]				

나. 보증금

계약이행 보증금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에게 채무 또는 귀책사유에 의한 배상책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계약 체결과 동시	- 로열티,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 계약종료 후 조치 (영업표지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 계약종료 후 본사가 회수 해야 하는 물품의 파 - 기타 가맹계약상의 위법 사항으로 인한 손해배상	*반환 시 미지급 금액을 상계한 후 지급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아래와 같은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의 미수금, 기 타 홍보비 등의 미수금 및 손해배상금을 제외하 고 반환
비고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에 지급해야할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되지 않음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 또는 가맹점 양수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최초 가맹비	2,200
최초 교육비	2,200
계약이행보증금	2,000(부가세 없음)
합계	[6,400]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1. 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67,550	6,755			10평 기준
인테리어	협력업체 (협력업체)	27,500	2,750	공사계약 시 (계약금) 10% ↓ 인테리어 공사 시작 후 1주일 이내	공사/공급 시작 5일 이전에 계약해지 또는 취소할 경우 계약금(공사계 약시 지불한 10%)은 반환되지 않으며 실비용은 정산함	내부인테리어만 해당. 철거, 냉난방기, 전기증설 등은 별도 테이블, 불박이 의자포함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 정대, 작업대, 상부/벽선반 *평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주방설비	협력업체 (협력업체)	27,500	2,750	40% ↓ 인테리어 공사 시작 후 2주일 이내		그릇용품, 조리용품 등 *평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추가될 수있음)
주방집기	협력업체(미지정)	1,650	-	40% ↓ 인테리어 공사 시작 후 3주일 이내		
의탁자	협력업체(미지정)	3,000		10%		
간판	협력업체 (협력업체)	3500	-	10%		기본형 전면간판 ※간판 전면크기에 따라 차등 적용 (지주간판 별도)

초도물품 총비용	(협력업체), 본사, 협력업체 미지정	4400	-	계약체결후 10일 이내	개점 5일 전 계약취소	명함, 발지, 오픈행사 비 등 오픈시에 필요한 비용
						오픈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에 필요한 상품, 원재료 등.
						기재된 금액은 발주량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별도사항 : 점포임대 비용, 상.하수도 및 화장실 공사, 외부공사 및 철거, 냉.난방시설, 소방공사, 음향 시설, TV, 전기/가스 증설, 오픈행사, 인.허가, 주방 후드, 닥트, 어닝, 외부테라스, CCTV 등의 비용은 별도입니다.

※ 도표상의 해당 항목 금액은 기준 평수의 가맹점 오픈시 예상금액입니다.

※ 초도물품의 경우 규격/단위의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가맹점 오픈시 추가 수량에 관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위 표 항목(정보공개서 V-1 내역 중 거래상대방 강제항목은 제외)은 귀하가 직접 설치/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점포 내/외장공사를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직접 시공할 경우 추가로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인테리어 공사 관련하여 가맹점 평면, 입면, 설계도면 제공비 및 감리 대가로 총 가맹점 면적(등기부 등본상 면적)을 기준으로 220천원(VAT포함/ 3.3㎡기준)과 간판을 본사 또는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하여 제작하는 경우 간판 기획관리비(디자인의 컨셉지정에 대한 대가)로 당사가 견적한 간판금액의 11%(VAT포함)를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7일 전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문의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상담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원하는 점포를 파악 → 가맹본부에 통지 및 협의 → 최적의 입지 도출 및 가맹희망자의 최종결정 → 가맹본부의 승인 ** 매장 평수는 상기 표(IV-1-라.)에 기재된 기준평수 이상으로 함.	당사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고려하여 귀하에게 조언할 뿐이며, 이는 해당입지의 법적, 구조적 가능성여부 및 매출과 수익 등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책임과 결정으로 신중하게 점포의 설치 장소를 정하여야 합니다.

바.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건강 진단 결과서 소지자 일 것 2.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부합할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할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3.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할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8세 이상일 것

사.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일성 및 품질 및 성능이 인정된 물품과 설비 등이 필요하고, 사정에 따라 부득이 실제 물품 내역 및 공급업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상기 내역은 매장상황(평수, 구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당 사	220	선불 1일	월 단위 입금으로 반환 없음	영업표지,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 경영지원 등의 대가로서 소멸성임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또는 운영방침과 각 가맹점의 영업방식 및 혜택부여 등에 따라 로열티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광고 분담금	당 사	V-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분담금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납부 후 1년 이내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광고 집행 시 반환 안됨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또는 운영방침과

판촉 분담금	당 사	비용 분담 기준 참고	7일 이내 분담금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납부 후 1년 이내 실시하지 않은 경우	판촉행사 집행 시 반환 안됨	각 가맹점의 영업방식 등에 따라 분담금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는 광고, 판촉비의 일부를 가맹점지원비로 부담할 수 있음
교육훈련비	당 사	사전 통지	추후 공지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후 반환 안됨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비용	당사 또는 지정업체 (협력업체)	교체실비	간판 등 변경 이전	간판 변경 후 반환 안됨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직접 선정한 업체와 할 경우 해당 업체와 협의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당사 또는 지정업체 (협력업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교체·보수 후 반환 안됨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직접 선정한 업체와 할 경우 해당 업체와 협의
자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20]%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 없음		가맹계약서 제7조 적용
POS	협력업체 (협력업체)	33	계약시 별도 협의	월지급액으로 반환없음	계약기간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이전 해지시 위약금 발생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또는 운영방침과 각 가맹점의 영업 방식에 따른 혜택 부여 등으로 상기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광고분담금은 일정비율로 청구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비는 가맹점 운영 중 원칙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특별교육에 한하여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광고분담 기준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 및 사업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필요 시 부담분의 일부를 가맹점 (판촉)지원비로 사용합니다.

물품 발주 및 미수금 총당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중 동등액이 상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미수금 또는 연체금이 계약이행보증금의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발주 차단 및 계약 갱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미수 또는 연체로 말미암아 발주 차단을 방지하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에 별도 조치(계약이행보증금의 증액 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의 설정)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금액 비율은 소수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작성)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를 수취한 바 없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고
상품 및 재고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및 재고상품의 보관상태 등 점검	연 1회 이상	문 의: 당 사
각종 설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각종 설비관리 상태 점검	연 1회 이상	
접객 및 교육상태	직원 복장 및 위생상태, 고객응대방법 점검	연 1회 이상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대한 회계조사	연 1회 이상	
기 타	가맹본부의 운영지침 등 준수여부 점검,	연 1회 이상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해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매출/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요청은 (서면, 이메일, FAX, POS, 발주 프로그램,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하기 위해서 별도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로열티와 광고분담금, 재계약 가맹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물품 공급에 따른 미납과 연체 등에 의한 발주차단, 물품 공급 중단 및 계약의 갱신거절과 해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총 계	2,200				
재가맹비	2,200	목시적 갱신 또는 갱신이 된 후 7일 이내 지급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미갱신된 경우	.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추가 교육비	실 비	추가교육 전 7일 이내	계약연장(갱신) 전 계약포기	교육에 필요한 실제 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 (가맹본부)와 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가맹금은 가맹금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상이하며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단순히 세금 등의 사유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대표자 동일한 때)는 제외합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당사의 전적인 귀책사유에 의한 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비용으로 간판, 점포 내·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 등 영업표지와 관련된 시설을 교체하며 이외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에 다른 요인이 경합되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부분 만큼 책임이 경감됩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가맹금은 가맹금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상이하며 가맹금 반환은 최초계약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당사에 지급해야 할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내역	공급가액(천원)	부가세(천원)	총금액(천원)	비고
양수 가입비	양수인에게 받는 가맹비	1,000	100	1,100	
교육비	양수인 신규 교육	2,000	200	2,200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2,000	0	2,000	부가세 적용X

다만, 양수인이 잔여 갹신요구기간이 아닌 갹신요구기간(10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완전한 계약기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규계약에 준하여 **가맹비** 및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라.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 간판 등 "소풍가다"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의 즉시 상환
 2. [소풍가다] 브랜드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의 상징물의 제거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소풍가다]의 가맹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행위의 금지
 3. 당사의 운영매뉴얼, 규정집, 지침 등의 자료 반환
 4. 당사의 소유물,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의 반환
 5.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의 삭제
 6. 온/오프라인에서 "구)소풍가다" 또는 "전)소풍가다"라는 표현 사용금지
 7.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 ③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 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제1항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④ 제①항의 철거 .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합니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매장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⑦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공급받은 물품을 공급받았던 금액의 30%이내에서 반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오·훼손이 심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경우 등은 반품이 불가합니다.
- ⑧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⑨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해지통보, 가맹점사업자의 사정 등)로 가맹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가맹점 오픈 당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해준 금액 (광고지원금을 포함한 모든 지원금) 및 감면해준 금액을 모두 가맹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사로부터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 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제1항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SÒPÒÒNGGADA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통일성과 명성유지를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2023년도 말 기준 가맹점이 없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소풍가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판매장려금)

가) 당사는 [소풍가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2023년 기준
:	:	:	:	:	
계					

나) 당사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사의 상표권 보호와 메뉴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구성해야 합니다. 지정된 메뉴를 판매/구성하지 않거나, 지정된 메뉴 외 다른 메뉴를 판매/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메뉴를 무단 삭제하여서도 안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및 별지를 참고하십시오.

상품·용역· 메뉴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지2] 메뉴 및 가격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계약기간 중 당사가 귀하에게 지정한 메뉴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경영환경의 변화 등 필요 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메뉴 제조에 따른 장비 및 집기 추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구입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메뉴를 변경 및 추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상기 표 및 별지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허락 없이 별첨의 메뉴내용 및 정보공개서 V-1 품목 중 거래상대방 강제품목을 귀하의 점포 외의 다른 곳(온라인 판매 포함)에 판매/유통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지정된 고객 외**에는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1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다른 가맹점사업자		2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가격은 물가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별첨 2** 메뉴명 및 판매가 참고)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양당사자가 합의한 가맹계약서 상 [별첨1]의 영업지역확인서의 내용과 표시에 의하며,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0.5km]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양당사자의 합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당사는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가맹점주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당사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주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은 가맹점주가 하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은 가맹점주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의 하자, 점포 개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주의 책임임을 확약합니다.

가맹점주가 선택하는 영업지역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별첨1]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가지도록 합니다.

다만, 해당 영업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역사 및 터미널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권(이하 "특수상권"이라 함)은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특수상권"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상권"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으로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메뉴 또는 상품 및 원부재료로 유통사업을 할 경우 쇼핑몰, 홈쇼핑, 편의점, 마트,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의 가맹점 등 온/오프라인의 유통망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전항의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에 있어서 가맹점주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을 실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영업지역확인서에 표시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동일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지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이 절대적 또는 배타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서 제9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지역에서 제외되거나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다른 브랜드인 경우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 간 영업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



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 및 디저트류를 판매하는 업종	소풍가다	해당없음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 계약매장에서 반경 0.5km 를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백화점,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대학교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영업지역이며, 특수상권의 영업지역은 특수상권 내로 한정됨	*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지도별첨이 없을 경우 가맹점으로부터의 반경을 영업지역으로 함)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따라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가맹본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소풍가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



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도메인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네이버 쇼핑	https://smartstore.naver.com/sopoonggada/products/9160410379?NaPm=ct%3Dlzuukkbs%7Cci%3Dd97c0d649c809b39ae47c7b79cd02f3b3d586ea4%7Ctr%3DsIs%7Csn%3D5716844%7Chk%3D3a86a3273171a824611e59f076178b60e4c19fe6	박일섭카이막 150g	가맹점과는 별개로 가맹본부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 (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상품)

마.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특수상권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며, 가맹본부는 특수상권에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본부는 특수상권에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 필요에 의해 해당 지역 가맹점사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직영점을 개설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의 요청과 합의에 의해 일정기간 운영 후 직영점을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경우, 해당 "특수상권"과의 입점계약에 따른 MD개편 및 퇴점조치 등의 문제는 가맹본부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투자비 회수 등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점포 철거 또는 점포 이전/리뉴얼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배려하여 1개월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다른 점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은 잔여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합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95%	5%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42.85%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최초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체결일부터 **【 2 】** 년이며, 이후 자동갱신 또는 재계약될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 일부터 **【 1 】** 년입니다.

구체적인 계약기간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 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다. 계약 갱신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SÒPÒÒÒNGGADA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1항 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1항 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3조 1항 3호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3조 1항 4호
○ 당사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3조 1항 5호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3조 1항 6호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유는 가맹계약서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 및 34조의 사유로써 당사자 간 신뢰로서 가맹사업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SÒPÒÒNGGADA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제26조 제1항의 각 사유 (34조 1항1호)
○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 6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1개월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4조 1항 2호
○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가맹점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1) 가맹점운영을 위한 각종 설비와 인·허가 등의 취득과 이행을 완료치 못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금전의 지급을 완납치 아니한 경우 3) 기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개점이 연기되는 경우	
○ 계약서 제6조(가맹점운영권의 부여) 및 제7조(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계약서 제19조~제29조 및 32조 36조에 기재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4조 1항 4호
○ 계약서 제10조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4조 1항 5호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 제16조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4조 1항 6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34조 1항 7호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 제30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4조 1항 8호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계약서 제3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의 요건 변동 시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34조 1항 9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협력업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4조 1항 10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예: 성추행, 폭행, 욕설 등)를 할 경우	34조 1항 11호
○ 계약서 제24조 가맹점 사업자가 물품을 직접조달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이 없이 직접 조달하여 사용 하는 경우	34조 1항 12호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상품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등, 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2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가맹본부의 위반사항을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4조 1항 13호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34조 1항 14호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경우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브랜드) 이미지 훼손방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확보 및 투자에 관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상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개점 전 교육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서 정한 위험관리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점포 점검 등에 대한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메뉴의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8) 당사가 규정한 가맹점 운영의 주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9)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4조 1항 15호
○ 기간만료나 종료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4조 1항 16호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다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4조 1항 17호
○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하여 개점 전 및 계약기간 중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위약금 및 손해배상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서 38조 손해배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34조 1항 18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 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조 제 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4조 2항
○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합리적·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파산한 경우 2.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가맹본부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34조 3항



바.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귀하와의 상호 합의 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기타 관련 업종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당사의 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 인지 및 검토 →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 동의 → 계약서 작성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동의 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한 날 또는 수정된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당사의 승인이 없었던 경우 당해 계약은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승인조건은 아래 별도 기재)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영업 양도일 60일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서면 통지(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 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당 사

양수인이 가맹점을 양수하면서 신규가맹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가맹계약으로 체결하고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합니다.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제 11 조의 최초가맹금(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을 양도, 임대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이하 "영업양도 등"이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맹점주가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리행사 하게 하거나 위탁, 담보설정, 동업,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일(또는 영업임대일, 담보제공일, 이하 같다) 60 일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는 매출액을 허위로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는 전항의 승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양도양수 승인 조건으로 양수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가맹본부가 이 기간 중에 이유를 적시하여 거절하지 않으면 영업양도 등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인의 투자비 내역, 영업 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 때, 가맹본부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운영권이 양도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매장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또한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대하여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가맹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단순히 세금 등의 사유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대표자 동일한 때)는 제외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인의 투자비 내역, 영업 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양도양수 시 영업설비, 시설물, 집기 등의 감가상각분과 향후 이에 대한 보충 및 필요비용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도금액이 양도인의 초기투자비용을 상회하는 등 양수인에게 현저히 불공정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을 것이 명백하여 오히려 양수인에게 신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본부는 양도양수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의 가맹계약은 종료되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양도양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책임과 결정에 의한 결과이며, **양도양수에 대한 당사의 승인이 양수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 등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행,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주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운영을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운영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대하여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가맹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상속인에 대해서는 최초 가맹금이 면제됩니다. 단, 소정의 교육비, 기타 경비는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상속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업무위탁	불가능	-		

기타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한, 해당 가맹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전·대차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가.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중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가맹계약 종료 후 12년 내 대한민국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소풍가다] 브랜드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본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메뉴를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협의하여 운영시간 조율가능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오전 10시 ~ 오후 9시 *추후 상권에따라 협의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무일 없이 매일 점포를 개장하여 영업을 하여야 하나, 연속하여 1일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휴업 7일 이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얻으면 됩니다.	문의 : 당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3 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 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담당팀(또는 담당 슈퍼바이저)에 통지하시고 본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휴업일로부터 3일전에 이를 매장입구 및 SNS, 배달플랫폼 등에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와 관련하여 점포의 면적과 유동 인구 및 방문고객의 수에 비례하여 매장의 적정 운용인력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점포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권장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인건비 비중을 매출 대비 20~25%(점주 직접근무시)로 권장	필수	본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점주 및 매장관리자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귀하는 가맹점 점포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점포의 위생 및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의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품질(Quality)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1회 이상/1년	
서비스(Service)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1회 이상/1년	
청결(Clean)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 이상/1년	
회계 감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장부나 POS검사 → 감사표 작성 → 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 이상/1년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가맹본부인 당사는 기업광고와 '제품 등'광고 등을 총괄하며, 경영적 판단과 결정으로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판촉 행사의 시행, 비용 부담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단위 광고/판촉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 판촉비의 50%	광고· 판촉비의 50% *가맹점주수에 안분부담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주의 사전동의(50%이상)→가맹 점의 광고참여 여 부 결정 →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 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행사 (전국행사) 분담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당사는 광고비의 일부를 가맹점 지원비로 부담할 수 있음
	브랜드 및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 판촉비의 50%	광고· 판촉비의 50% *가맹점주수에 안분부담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 판촉비의 100%	-		
가맹점 개별 광고 및 판촉	가맹점 개별&자발 적 광고 및 판촉	없음	100%	-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30일 이내 승인여부 통지
판촉 행사	전국적인 판촉 행사	통일적인 홍보물 등의 디자인, 시안 등의 제작비용 등 은 당사가 부담함	가맹점사업자가 직 접 판매하는 상품 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 품, 기념품, 팜플렛, 전단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 점사업자가 부담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 동의한 가맹점 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 약정을 체결한 경 우에는 해당 가맹 점사업자만을 대상 으로 광고 및 판촉 을 실시할 수 있습 니다.	분담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맹점별 판촉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상동	

전국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은 당사는 물론 가맹점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는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에 따라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그 약정은 가맹계약과는 별도로 체결될 것입니다. 또한, 그 약정의 내용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할 것입니다.

-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한도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주 중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 전 동의를 얻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 동의한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당해분기에 지출한 광고비 중에서 각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다음 분기 첫 달의 말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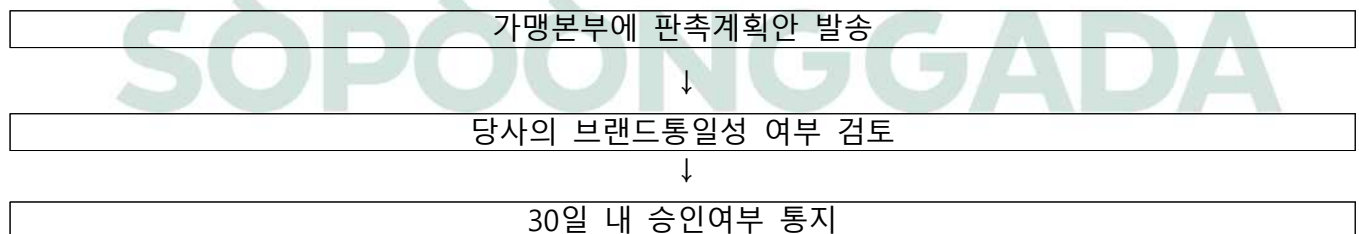
가맹점사업자는 본인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자기의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광고(매스미디어 및 SNS 포함)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전에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사항(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사용 이미지 등)을 가맹본부에게 통지 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맹본부는 3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광고 및 판촉비용을 부담하였을 경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을"이 부담한 총액

가맹점사업자는 매장 내외부에 가맹본부가 제공한 창업, 가맹점 모집 관련 안내문 부착에 동의하기로 하며,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점포 및 영업설비/집기[간판, 인테리어, 주방설비, 집기, 초도물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개점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이하 영업설비/집기라 한다)] 등을 매스미디어(신문, 잡지, 도서, TV, 라디오, 영화, 유튜브 등)에 노출하거나, 노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 간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가맹본부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34조(계약의 해지)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 운영을 일시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소풍가다"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의무 불이행기간에 대해 1일당 금일십만원(₩100,000원)씩 위약금 및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최대한도는 금삼천만원(₩30,000,000)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게 계약서 제30조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제3자에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종료 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영업표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 또는 이용할 경우, 계약종료 익일부터 그 사용 또는 이용 종료일까지 손해배상금으로 1일당 금일십만원(₩100,000원)씩 지급하여야 합니다.



- 라.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 제36조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중 하나의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마.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계약일 x 금일십만원(₩100,000)]의 위약금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해야하며, 그 최대한도는 금삼천만원(₩30,000,000)으로 합니다. 이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 바.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고, 실제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아래 각 호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위약별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1.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영업개시 전, 가맹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해약을 요청한 경우는 예치금의 50%
 2. 영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가맹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해약을 요청한 경우는 예치금의 100%
- 사. 가맹점이 양도양수되어 양수자인 가맹점사업자가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서 제38조 ⑥항에서 산정한 금액과 계약서 제38조 ⑦항의 금액(양도자 기준) 중 더 큰 금액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해지일 직전 12개월 월 평균 “갑”과 “을” 간의 가맹거래로 인한 수익 x 10% X 잔여개월수

- * 영업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표의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을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월 평균으로 계산
- * “을”의 정상적인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월(月)은 제외하고 15일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월(月)만 기준에 산입. 다만, 전체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 영업일로 일할 계산하여 월 평균으로 산정
- * “갑”과 “을”간의 가맹거래로 인한 수익이라 함은 로열티, 물류수익, 판매수수료, 특수관계인의 경제적이익 등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을”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수익을 통칭함

- 아. 계약서 제38조 ⑥항에서 [계약체결 후 - 개점 전]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인테리어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인테리어 업체에 지불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별개로 인테리어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업자와 향후 협의하여 그 금액을 정하기로 합니다.
- 자. 계약서 제38조①항에서 ⑧항까지의 위약별 및 손해배상 이외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차.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게 제14조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갑”이 가맹사업을 제3자에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가맹점이 양도양수되어 양수자인 가맹점사업자가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본 조 제2항에서 산정한 금액과 본 항의 금액(양도자 기준) 중 더 큰 금액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 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 제23조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손해를 가맹본부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타. 계약서 제24조 가맹점사업자가 물품을 직접조달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이 없이 직접 조달하여 사용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약 **[45]**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 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 ·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D-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예치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예치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7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간판, 별도공사 등 제외)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점포의 면적과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오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위한 숙고기간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	비고
분쟁 발생 →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와 면담 → 당사 합의 또는 조정안 제시 → 합의 또는 조정안 수락 시 분쟁 종료	자율적 해결 원칙

상기와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SÒPÒÒNGGADA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당사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당사 부담 비용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당사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 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가맹본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신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의 지원내역

당사는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소양 서비스 마인드 기술적 지식 배양 서비스 제고 매출증대 방법 디저트 및 음료조리방법	실습교육 또는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시작하여 개점 전 까지 이수 하여야 함	필수 교육
수시·특별 교육	신제품 교육 영업방침 행정조치에 따른 소집교육	실습교육 또는 집단 강의	교육실시 14일 이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비 정기적 교육 필수 교육

※ 수시·특별교육은 개업이후 교육으로 일정이나 기한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3시간/1일 총 7일 (21시간) 피자교육 포함시 총 14일 (42시간)	2,200	-교육비는 개업 및 운영교육비를 포함하는 금액임 -조리실습비를 포함한 금액임
수시·특별 교육	필요 시 산정	교육실시 14일 이전에 교육비용 등을 통지, 통상 실비 수준	추정금액 사전고지

신규교육은 [소풍가다]의 가맹사업 통일성(맛, 서비스 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상기에 기재된 기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위 기간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습득 정도가 낮거나 교육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맛, 서비스 등)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교육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총당합니다.



또한, 추가 교육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소풍가다]의 기준(맛, 서비스 등)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의 개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교육내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관리자, 종업원이 포함될 수 있음)

가맹점사업자가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비용은 실비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 이수 정도가 미흡하거나 참여 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가맹본부는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연장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수시·특별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14일** 전에 그

교육계획·장소와 시간을 수립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업이후 교육으로

최소시간이나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가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실비를 기준으로 교육비용을 산출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필요시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가맹본부에게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운영, 관리하는 매장'이 아닌 해당 가맹점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 비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때 비용 산출 내역은 계약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공합니다.

SÒPÒÒNGGADA



3. 교육·훈련의 주체

위 표의 부담비용은 1개 매장 1인 이하 교육비용을 말하며, 숙박비용 및 교통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하며,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점 후 가맹점사업자가 채용한 관리자(교육에 따라 종업원 포함)가 변경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관련 사실을 즉시 가맹본부에게 통지하고 변경된 관리자(교육에 따라 종업원 포함)가 계약서 16조에 의한 교육을 이수 받도록 하고 1인당 교육비(200만원, VAT별도)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6조에 따라 1개월 이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6조에 따라 1개월 이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SÒPÒÒÒNGGADA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북	경주본점	경북 경주시 양남면 다래길 15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년 7개월(31개월)	직영점 1곳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운영6개월 미만인 곳 산정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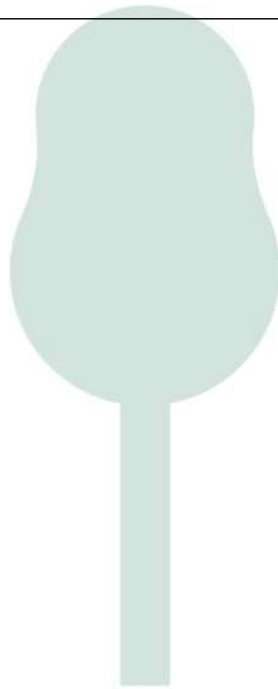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455,400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또한, 당사의 직영점은 법인사업자의 지점으로 본사 매출액과 합산하여 산출되었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표지에 기재된)당사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ÒPÒÒÒNGGADA

별 지

- | | |
|--------------------------|-----|
| 1. 매출액 증명서류 | 별-1 |
| 2. 메뉴 가격표 | 별-2 |
| 3. 가맹점 순회 점검표 | 별-3 |
| 4. 주요 품목 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 별-4 |
| 5.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 별-5 |
| 6.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 별-6 |

별지 #1

매출액증명서류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 #2

메뉴가격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 #3

가맹점 순회 점검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 #4

주요 품목 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 #5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